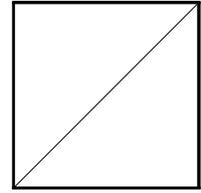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26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12. 22. (제 22 차)	

(주)투피엠대부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연월일	2020. 12. 22.

1. 의결주문

(주)투피엠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투피엠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재지(영업소) 불명으로 확인된 (주)투피엠대부에 대하여 등록취소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제2항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(공고내용 및 방법)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1.19.) 심의필

<별지>

(주)투피엠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투피엠대부 : 등록취소

2. 조치사유

가.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

(주)투피엠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*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(2020.8.10.)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(공고만료일, 2020.9.9.)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관 계 법 규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

⑥ ~ ⑧ (생략)

제18조의7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조(공고내용 및 방법)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·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, 시·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.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17조(기관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, 영업·업무의 전부 정지

가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·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·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

나.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
다. ~ 라. (생략)

<붙임 2>

제재내용 공개안

1. 회사명 : (주)투피엠대부*

* 대표자 : 홍영표
 등록번호 : 2018-금감원-1489(P2P연계대부업)
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4, 9층

2. 제재조치일 : . . 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관	등록취소, 과태료 240만원
임원	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대부업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지 불명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바

(주)투피엠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*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(2020.8.10.)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(공고만료일, 2020.9.9.)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소재지 영업소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
(2) 업무보고서 미제출

□ 대부업자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9항에 따라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,

- (주)투피엠대부는 2018.6.30.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12조 제9항, 제13조제1항 및 제6항, 제18조의7제2항, 제21조, <별표1>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3 제1항, 제11조의3제2항 및 <별표3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가계금융과	핀테크혁신실
연 락 처	02-2100-2513	02-3145-7142